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재나2007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등]

---

## 전 문

**원고(재심피고), 피항소인A**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산경

담당변호사 김선종, 유돈교, 이석형

**피고(재심원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찬중

담당변호사 김유진

**변론 종결**2021. 3. 31.

**판결 선고**2021. 4. 14.

**제1심\_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7가단104737 판결

**재심대상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26832 판결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대 8,348m<sup>2</sup>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가) 부분 138m<sup>2</sup>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가) 부분 대지 138m<sup>2</sup>를 인도하고, 11,858,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04737호로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지상 건물의 철거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9. 6. 1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683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이 2020. 4. 22. T의 대표권 부존재 및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20. 4.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2020. 5. 8.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법원이 2020. 5. 12. 상고장 각하결정을 하고, 위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2020. 5. 8. 확정되었다.

##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제1항: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재심 청구원인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종종 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고, 이는 원고의 당사자적격에 흠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피고 소송대리인은 제5차 변론기일에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와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이러한 재심사유라면 피고가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2020. 4. 23.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재심소장은 그로부터 30일을 경과한 2020. 9. 7.에서야 접수되었다.

3) 피고는, 원고의 소 제기에 관한 권한 수여의 흠결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라 같은 법 제456조에 의한 재심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재심소장에 기재한 청구원인에 의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불과하지 같은 법 제457조의 '대리권의 흠' 즉, 전혀 대리권을 갖지 아니한 자가 원고 모르는 사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대로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남천**

**판사박준민**

**판사이근수**

**별지**